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268 발의연월일: 2022. 7. 4.

발 의 자:성일종·김선교·박덕흠

백종헌 • 윤주경 • 이종성

이채익 · 장동혁 · 정경희

조명희·최춘식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해양보호생물이 서식하여 보전 가치가 있거나 해양경관이 수려하고 탄소흡수원 기능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보호구역 등의 우수한 해양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과 동시에 국민의 해양보호구역과 해양생태계에 관한 이용이나 접근이 어려워 해양자산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 또는 괴리 등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해양보호구역 및 해양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과 그에 관한 국민의 교육·인식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해양정원'의 정의 및 지정,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자산을 보호·관리하고,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해양정원'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16호 신설).
- 나. 국가해양정원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2 신설).
- 다. 국가해양정원의 관리·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해양정원의 체계적 보전과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3조의3 신설).
- 라. 국가해양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국가해양정원 협의 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3조의4 신설).
- 마. '국가해양정원' 지정 지역의 보전·이용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 근거를 규정함(안 제54조제3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국가해양정원"이란 해양생태계의 가치가 높아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제15호에 따른 해양자산의 유형·무형의 가치를 보전 ·관리하고 국민이 해양생태계를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43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해역을 말한다.

제9조의3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에 따른 국가해양정원의 지정·관리·운영 제28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가해양정원의 보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국가해양정원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한 해양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국민에게 생태체험 및 해양생태계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한 인식 증진 등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해역을 국가해양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제25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근지역
- 2.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그 인근지역
- 3. 그 밖에 해양생태적 가치가 우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해양정 원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해역
- ② 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정원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해양정원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국가해양정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43조의3(국가해양정원의 관리·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국가해양정원을 체계 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정원으로 지정된 지역의 체계적 보전과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제43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 이용시설
 - 2. 해양생태계 연구시설
 - 3. 그 밖에 해양생태계 및 국가해양정원을 보전ㆍ이용하기 위한 시설

-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그 시설의 설치·운영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의4(국가해양정원 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협의하여 효율적인 국가해양정원 관리·운영을 위하여 국가해양정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해양정원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 2. 지역 주민 참여방안
 - 3.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국가해양정원 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시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4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제43조의3제2항 각 호의 시설의 설치·운영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u><신 설></u>	16. "국가해양정원"이란 해양생
	태계의 가치가 높아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제15
	호에 따른 해양자산의 유형ㆍ
	<u>무형의 가치를 보전·관리하</u>
	고 국민이 해양생태계를 건전
	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
	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43조의
	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해역을 말한
	<u>다.</u>
제9조의3(해양생태축의 관리계획	제9조의3(해양생태축의 관리계획
등) ① (생 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	②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생태축을 우	
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에
	따른 국가해양정원의 지정ㆍ

4. ~ 6. (생 략)

제28조(해양보호구역의 관리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 구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과 협의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 된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을 5 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 4. (생 략) <u><신 설></u>

<신 설>

관리 · 운영
<u>5</u> . ~ <u>7</u> . (현행 제4호부터 제6호
까지와 같음)
제28조(해양보호구역의 관리계획)
①
1. ~ 4. (현행과 같음)
5. 국가해양정원의 보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제43조의2(국가해양정원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한 해
양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관
리하고 국민에게 생태체험 및
해양생태계에 관한 교육과 홍보

를 통한 인식 증진 등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해역을 국가해양정원으 로 지정할 수 있다.

- 1. 제25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근지역
- 2.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그인근지역
- 3. 그 밖에 해양생태적 가치가 우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해양정원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해역
- ② 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정원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해양 정원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 를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

<신 설>

하는 사항 외에 국가해양정원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3 (국가해양정원의 관리 ·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국가 해양정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 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3조의2 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정원으로 지정된 지역의 체계적 보전 과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 다.
- 1. 제43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 태계보전·이용시설
- 2. 해양생태계 연구시설
- 3. 그 밖에 해양생태계 및 국가 해양정원을 보전·이용하기 위한 시설
-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그 시설의 설 치·운영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

<신 설>

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 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의4(국가해양정원 협의회 의 구성・운영) ① 해양수산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효율 적인 국가해양정원 관리 · 운영 을 위하여 국가해양정원 협의회 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해양정원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 다.
-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의 협조
- 2. 지역 주민 참여방안
- 3.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사 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국가해양정원 협의회 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시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4조(국고보조) 국가는 해양생 제54조(국고보조) -----

태계	의	보;	전	및	관:	리를	P	한	다
음의	사	업-	을	집	행ㅎ	는	기	まス	회
단체	또	는	해	양	생 티]계.	보전] 관	ŀ련
단체	에	대	하여	뉟	예신	· 라의	범	위	안
에서	コ	[비	용	의	전-	부 5	포는	- Q]부
를 년	보조	할	수	ک]다	•			

1. ~ 3. (생 략) <u><신 설></u>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43조의3제2항 각 호의
시설의 설치 · 운영